

제343회 임시회
2015.10.21.(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10.2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5년 10월 02일

다. 회부일자: 2015년 10월 05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0월 19일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신경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14. 5. 2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14. 11. 28. 공포)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 5. 15. 공포) 개정에 따라 학생 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및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안 제2조~제4조)
- 2) 법인 또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3)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행 상황 등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생 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는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①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에 따른 체육단체로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였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지원과 지출 근거가 좀 더 명확히 이루어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화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이란 대회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법인 또는 단체”란 학생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5.] [조례 제3790호, 2015.5.15, 전부개정]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7호, 2015.3.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690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